

리테일 : 제2023-45

2023.03.03
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
제 목 :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 공시

1. 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에서 운용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펀드명:

-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
- 하나UBS아시안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

나. 내역:

펀드명	종목명	매매일자	매매구분	매매수량 (주좌)	단가 (현지통화)	매매금액 (백만원)	자산총액 비중	통화
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	NIPPON ACCOMMODATIONS FUND	2023-03-02	취득	67	606,170	391	0.42%	JPY
하나UBS아시안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]	NIPPON ACCOMMODATIONS FUND	2023-03-02	취득	9	606,246	53	0.77%	JPY

※ 상기 글로벌리츠 펀드의 매매내역은 하나UBS글로벌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[재간접형] 펀드의 매매 내역임.

근 거: 자본시장법 제89조 제1항 제5호

자본시장법

제89조(수시공시)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 <2009. 2. 3., 2011. 8. 4.>

시행령

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09. 2. 3., 2010. 6. 11., 2015. 10. 23., 2017. 5. 8.>

6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나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끝.

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(주)  
대표이사 이원종



수신처: 하나은행,하나금융투자,DB금융투자,IBK투자증권,KB증권,NH농협은행,NH투자증권,SK증권,광주은행,교보증권,  
교보생명,국민은행,기업은행,대구은행,미래에셋증권,미래에셋생명,메리츠증권,부국증권,삼성증권,수협중앙회,  
스탠다드차타드은행,신영증권,신한금융투자,신한은행,우리은행,유안타증권,유진투자증권,키움증권,하이투자증권,  
한국투자증권,한국포스증권,한화투자증권,현대차투자증권